

2015

연구보고서-24

I S S U E P A P E R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과제책임자· 이미정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과제책임자  이미정 연구위원

 Tel: 02-3156-7154

 e-mail: mjinglee@kwdimail.re.kr

요약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미정·윤덕경·이현혜(2015).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아동·청소년·장애인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고, 피해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하기까지 어려움이 더욱 큼.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대인관계에 취약하며 의존적이어서 성폭력 피해 노출 및 실태 파악이 쉽지 않음.

최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음. 피해자 지원체계를 지원기관을 통한 의료·심리·형사사법·가족지원 서비스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려고 함.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피해자들은 지원기관과 접촉하기 전까지 정보부재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도 경찰수사 및 검찰조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지적됨. 최근 도입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이들 제도의 운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다양한 서비스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과 관련된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시하였음.

-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국선변호사 대상 인터뷰 실시
- 경찰청과 법무부 담당자, 국선변호사 등 전문가 면담
-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 및 지원 방향에 대한 포럼 개최

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방법

-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9일 기간 동안 설문조사 실시
- 전국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 124개소를 대상으로 소장 외 1인(각 상담소 2부)에게 설문지 응답을 요청하고 해바라기센터는 2015년 1월말 기준 운영되고 있는 33개소를 대상으로 부소장 외 2인(각 센터 3부)에게 설문지 응답을 요청
- 총 129명의 응답을 취합함

2) 주요 조사내용

- 기관 이용 경로: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 유형별로 조사
- 서비스 지원 애로사항: 기관 상황, 의료 및 심리치료 서비스, 형사사법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
- 유관기관 간 연계 정도

3) 조사 결과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는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경찰을 통해 지원기관에 오는 비율이 높음
- 종사자의 이직, 후임자 구인 등 종사자의 지속적 근무 상황이 좋지 않음

- 의료·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속한 증거 채취에 관련한 어려움과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정신과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상담소보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담/비전담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나.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1) 조사대상 및 방법

- 피해자 유형별로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당사자나 보호자와 인터뷰
- 2015년 4월 15일부터 10월 6일 기간 동안 실시
- 지원기관을 통하여 서울, 충남, 전북, 경북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고루 피면접자를 섭외
- 총 14건의 사례에서 장애인 피해 사건 2건에서는 피해자와 보호자를 동시에 인터뷰하여 16명의 피면접자와 사례별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
- 사례별로 1시간~2시간에 걸쳐 1회씩 진행
- 피해 당시의 상황 진술로 시작하여 이후나 이전의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술
- 동의를 얻어 진술을 녹음하고 채록하여 기록물을 작성하되 연구진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비문까지 그대로 인용하였음

2) 주요 조사내용

- 피해 내용, 보호자의 피해 인지 시점, 피해자 지원기관 접촉 경로, 지원기관 이용 경험, 경찰 수사 관련 경험, 검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의 경험, 국선변호사 지원 경험 등과 만족도 및 어려움

3) 조사결과

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 사례 분석 결과

-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성폭력피해를 잘 인지하지 못함
- 사춘기 초기의 아동은 또래 친구들을 상담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가해자는 아동의 생활 환경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인 경우가 많음
- 피해 이전에는 보호자 역시 지원센터에 대해 알지 못함
- 아동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 검색으로 대응책을 찾는 경향이 있음
- 병원이나 경찰과 우선 접촉한 후 지원센터에 대해 안내받는 경우도 있음
- 지원기관 서비스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아동의 안정과 부모-아동 관계 개선 측면에서 심리상담 과정에 높은 호응을 보임
- 동종 피해당사자 모임에 대한 평가와 요구가 높음
- 보호자들이 형사사법 절차를 꺼리는 이유: 가해자 처벌이 미약할 것이라는 예상, 보복의 두려움
- 진술녹화 시, 일시와 장소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기가 힘든 아동 피해자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를 배려하려는 등 진술 담당관이 노력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 공판 과정에서 대개 피해아동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고 보호자가 참석하거나 국선변호인, 지원기관에서 참석
- 국선변호인과 대면 시점이 빠르고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하고 공판에 동석하는 등 적극적 법률 지원을 받은 경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국선변호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연락이 원활하지 못한 것, 문의 사항에 답변 없음, 소극적 대응 등을 불만 사항으로 지적함

나)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사례 분석 결과

- 대개 학생으로서 학교 교사나 교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와 지원 절차를 밟음
-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피해사실 인지 이전에 알고 있던 경우는 없었으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피해 이후 지원기관 관련 정보를 상기하지 못함
- 피해자지원 정보를 늦게 접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경찰의 부적절한 진술 조사와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어려움을 경험함
- 면접 참여자들은 지원기관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하였고 특히 사춘기 자녀와 보호자가 원만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심리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경찰 수사 과정에 있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측면과 2차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는데, 성폭력 피해 증거 확보 노력, 피해자 안정 후 녹화를 통한 진술,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 확보 등의 과정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사례도 파악됨
- 대개의 피해자들은 공판에 출석하여 피해 과정을 상기하는 상황을 꺼려 출석하지 않음
- 가해자가 예상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경우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재피해, 피해자의 심리적 동요에 대한 염려 등으로 고통 받음
- 피해자 관련 피면담자 절반 이상이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회고함
- 사건 해결 초기부터 원활히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되고 접촉이 잦은 경우, 정보 제공에 적극적이고 답변 내용이 명확한 경우, 피해자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높음
-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지원이 미흡한 경우 피해자들은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상담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임

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례 분석 결과

- 지적장애인은 성범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 피해자 조기 개입 및 보호가 어려움
-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가 장기화됨
- 성인의 경우에도 피해신고는 피해자 본인보다 보호자를 통해서 이루어짐
- 가해자는 대부분 친분이 있는 권위자나 친족으로서 피해자의 취약하고 미약한 지적능력을 알고, 낮은 자기방어능력 등의 약점을 범죄와 그 은폐에 이용함
-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개입 시기를 놓치거나,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기도 함
- 지원기관으로의 접근은 피해자가 공식 지원체계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기관의 신속한 서비스 연계능력이 피해자 보호 및 회복에 있어 매우 결정적임
- 연계되어 있는 경찰 서비스는 조사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자와 보호자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을 취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진술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질문으로 진술이 왜곡되기도 하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가 발생함
- 국선변호사에 있어 전담/비전담 여부에 따라 서비스 수행과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남

다. 지원기관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1) 조사대상 및 방법

- 2015년 7월~8월에 걸쳐 2개월 동안 실시.

-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여건이 열악한 것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섭외.
-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지원 현황 파악이 비교적 미진하여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비중을 높임.
- 소장 및 부소장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가능한 일대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2명을 동시에 면접 진행.
-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활용.

2) 주요 조사내용

피해자 지원제도 중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비디오 녹화진술 및 신뢰관계자 동석, 의료 및 상담 지원 등의 현장 활용 경험을 통해 효과, 만족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3) 조사결과

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의 대다수가 경찰단계에서 국선변호사를 지정받아 도움을 받고 있음.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전담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 적극성, 피해자와의 소통, 수사과 재판에 참여, 지원기관과의 협업 면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가해자의 변론도 맡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나) 진술조력인 제도

장애에 따른 특성 이해 부족, 소통능력 부족, 아동발달 특성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진술조력인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점과 3급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 미배치 문제, 피해자 특성 파악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 부족, 진술조력인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신뢰 부족 문제가 제기됨.

다) 비디오 녹화진술과 신뢰관계자 동석

조사관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녹화 진술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음.
신뢰관계자로는 국선변호사가 대개 동석하고 있음.

라. 국선변호사 대상 인터뷰 실시

1) 조사대상 및 방법

- 2015년 6월 5일 실시.
-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2인을 동시에 심층면접
-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활용
(인터뷰 내용 인용 LAW-1, LAW-2)

2) 주요 조사내용

- 의뢰인 지정 이후 국선변호사 역할 및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사건 진행의 어려움
- 피해자 진술조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
- 성폭력사건 공판 진행 과정
- 운용관련 문제: 법무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역할과 현실에서의 괴리

3) 조사결과

가) 의뢰인 지정 이후 국선변호사 역할

-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면담 날짜를 잡음
- 피해자 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관과 일정 상 및 피의자 조사내용에 대응
- 검찰과 추가조사 및 대질조사에 대해 상의
-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경우 조치를 취함

- 재판 일정 상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검사나 판사와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논의함

나)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사건의 어려움

- 진술조사에 있어 의사소통을 위해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및 항거곤란 상태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이나 피의자의 ‘피해자 장애상태 인지’가 주요 쟁점이 됨

다) 피해자 진술조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

- 피해자는 성폭력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고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렵고, 진술의 법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국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진술의 법적의미,
정확한 진술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신속한 진술조사에 앞서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고려
- 진술오염 방지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에 신중을 기해야 함

라) 성폭력 사건 공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부의 차이

- 국선변호사의 의견 진술에 대한 허용 여부 및 허용 정도가 재판부
별로 상이함
- 수사 및 공판 자료 접근에 있어서도 재판부별로 차이가 있음
- 정보의 제한은 의뢰인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
- 수도권 지역보다 지방 재판부의 사건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짐
- 법원의 성폭력전담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속적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마)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용 관련 문제

- 국선변호사라는 인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 문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장애인·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 국선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정서적 지원과 같은 의뢰인 요청사항에 대해 의뢰인 측에 초기에 공지할 필요 있음
- 보수 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가 까다로워 보수 청구를 포기하기도 함

마. 경찰청과 법무부 담당자, 국선변호사 등 전문가 면담

바.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피해자 지원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

3 정책제언

1) 피해자 지원기관 관련 과제

가.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1)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을 적극 홍보

- 피해자와 보호자가 적절한 지원기관을 발견하고 접촉하기까지 시간 지연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를 체계화 및 확대
- 학교를 통한 사례 연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과 교사 대상 홍보 강화

(2)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상담소의 강점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유기적 협력 강화
- 해바라기센터로 접수되는 사례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거주지 인근 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사례지원에 참여하도록 체계화
- 해바라기 운영위원회에 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참여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3) 지역 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 의견서 제출, 재판 모니터링, 피해자 특성에 대한 정보, 사회복지 기관 연계, 지속적 사례 관리 등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와의 협조체계까지 구축

(4) 지역 성폭력상담소 의료지원 개선

- 해바라기센터에 비해 지역 민간 상담소는 의료비가 부족하고 성폭력피해자 전담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정신과와 산부인과의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임신 및 낙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병원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지역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해야 함

(5)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성폭력 피해의 개념, 예방법, 피해 후 피해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보호자, 교사,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
- 장애인의 사회적지지 및 자원을 강화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의존성

을 낮추고 문화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용 문화센터 설립

(6) 친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 역기능적 가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친족성폭력의 경우, 비가해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특수한 피해사례 관리를 위해 가족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

(7)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가정 복귀가 어려움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필요

나. 지원기관 서비스 개선

(1) 증사자 역량 강화

- 상담·심리 치료와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를 위해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우 개선이 필요

(2) 남아·청소년 피해자 지원 방식 개선

- 여성 상담사, 여성 경찰이 아닌 동성의 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2) 형사사법절차 상의 개선 과제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1)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편차를 줄임

- 초기 대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함

- 연락이 원활하고 공판에 동석하는 경우 만족도가 큼
- 가해자 측 합의 시도에 대한 접근금지조치 등 변호인으로서 분명한 태도

(2)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확대

- 전담과 비전담 간의 업무 수행 차이 및 만족도 차이가 확연함
- 비전담의 경우 피해자 변호를 하다가 가해자 변호를 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성과 효과성이 떨어짐

(3) 국선변호사 대상 교육 강화

-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성 교육, 장애 유형별 특성 교육,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 강화
-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지원기관 자원활동 의무화

나.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방안

(1)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사전면담 현실화

- 현재 시스템으로는 진술조력인이 피해자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술조력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조사 전 피해자를 면담하여 조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자로 동석하는 것이 첫 대면임
- 진술조사 진행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은 개입할 수 없고 휴식시간이나 조사 종결 후 간략한 의견 피력만 가능함
- 진술조사 전에 피해자와 공감대(Rapport)를 형성하여 피해자의 언어적·인지적·행동적 특성을 파악해야 조사관과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을 증개 지원 할 수 있음

- 피해자 진술조력인이라는 낯선 타인이 진술조사에 한 명 추가되는 것으로 오히려 더욱 위축될 수 있음
- 피해자 사전면담을 현실화하여 진술 중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2)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인식 제고

-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술조력인 제도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진술조력인의 권한을 확보
- 진술조력인의 의견 및 그 전문성에 대한 존중

(3) 3급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지원 현실화

- 지적장애인 중 3급 장애인이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진술조력인 지원은 거의 불가능함
- 중증 장애인 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이 지원되어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함
- 지원 효과가 큰 3급 지적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배치가 긴요함

(4)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례에 진술조력인 의무화

- 성폭력 특례법 제36조에 의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5)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

- 장애정도에 대한 이해, 아동 발달 정도에 따른 특성 이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및 특정 용어에 대한 이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 이론과 더불어 현장 실습이 강화되어야 함

다. 진술조사 및 신뢰관계자 동석 관련 개선

(1) 진술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디오 진술녹화(성폭력 특례법 제 30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와 신뢰관계자 동석(성폭력 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운용되고 있음
- 피해자가 안정을 취한 후 진술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
- 아동·장애인의 특성상 반복 질문과 압박으로는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진술하도록 할 수 없고 반복 진술시 진술 왜곡이 보다 심각해짐
- 인지기능 및 기억능력의 발달적 한계, 높은 피암시성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조사관의 역량이 중요함
-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2) 신뢰관계자 선정

- 현장에서는 주로 국선변호사가 동석하며, 때로 상담원, 보호자, 진술조력인이 동석하고 있음
- 지속적 사례관리에 감정을 갖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초기부터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지원방법이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볼 수 있음
- 진술조사 시 경찰,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는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에게 혼란과 당혹감을 줄 수 있음

라. 공평한 형사사법 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는 최초로 접촉한 지원기관 및 지원 담당자에 따라 사건 수사·재판 및 치유 과정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지원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함

4 기대효과

가. 아동·청소년·장애인의 피해인지도와 지원기관 접근성을 높여 성폭력 피해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함.

- 사전 교육을 통해 성폭력 피해의 장기화 방지
- 피해 발생 후 신속히 적절한 지원기관을 발견하도록 함
-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들과 지원기관 간의 연계성을 높여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역기능적 가정 사례 관리 등 잠재적 피해자 보호 강화
- 지원기관과 수사기관의 면밀한 협조로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나. 형사사법절차 상의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여 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피해자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이 구현되도록 함.

- 균등하고 만족스러운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
- 진솔조력인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가 의사소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수사과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 성폭력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자이며 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특히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국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예방에 기여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